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변경 공고(3차)

-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 진 주 시 장

###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지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 예산 증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확대

### 2. 사업규모 : 162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3. 신청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27.(금)

-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4. 지원대상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중유, 고체연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기존 일반 버너 및 노후 저녹스버너(설치연도기준 10년 초과)

5. 사업우선순위(대상자 선정 순서) : 접수순서대로 지원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완료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함  
(단, 방지지설 교체지원의 기술검토에 따른 보완은 제외함)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 제출,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에 한하며, 우체국 소인일자 순서로 접수함)

- 보내실 곳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환경관리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지원사업 담당자

7. 지원내용

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

- 방지지설 : 여과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RTO, RCO, SCR, 저녹스버너, 전기집진시설, 응축에 의한 시설(수냉식) 등 노후 방지지설 교체 비용(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포함)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1~5종 대기배출시설 사용연료 전환 설치비용(저녹스버너, 가스공급시설, 옥외배관 등)

라.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기존 일반 버너 및 노후 저녹스버너(설치연도기준 10년 초과)의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 세부적인 사항은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적용

# I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관련자료 붙임 1)

## 1.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가. 방지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세부 지원액 : 붙임 1-1]

-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실제 설치비의 90%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나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지원 가능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더 크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하며, 단, 법령에 따라 방지시설의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기술검토결과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설 지원할 수 있음.

### 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지원받는 방지시설 부착기기 수량에 한함)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대기배출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나. 지원대상 선정기준 : 사업 필요성 평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 평가에 따름

##### ○ 1차 및 2차 합산한 점수(200점 만점)로 평가함

- 1차 진주시 사업 필요성 평가\* 점수 : 100점 만점 **【붙임 1-2】**
- 2차 전문기관 기술검토 평가 점수 : 100점 만점 **【붙임 1-3】**

※ 전문기관 기술검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

※ 사업 참여 전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신청 사업장은 우선 선정(진단 결과 보고서 첨부)

##### \* 1차 사업 필요성 평가 기준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2020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개선 필요 사업장
- 민원유발 및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다.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라.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www.greenlink.or.kr](http://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3.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사업자 선정

#### 가. 사업참여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연소소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체 가능

#### 나. 사업장 선정 :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진주시에 제출

#### 4.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 **【붙임 1-서식 3】** 진주시에 제출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사업 참여 전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신청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신청서 : 붙임 1-서식 6】**

나.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대상사업(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 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진주시 및 경남녹색환경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 가능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사업승인)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소에 개별 통보

**※ 사업승인 후 방지시설 설치 관련 변경 불가 [예] 설계변경, 시공업체 변경 등]**

라.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마.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서 제출 **【붙임 1-서식 9】**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진주시에 제출(단,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1개월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해 계약체결기간 연장 요청 가능)

- ※ 대기방지시설 설치계약서(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에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진주시에서 직접 수령의 내용을 명시할 것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붙임 1-서식 11)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진주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바. (방지시설 등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붙임 1-참고 1】** (\*측정 외에는 밀폐조치)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 가능
-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실시(80~110% 범위의 유량이 측정되어야 함)**. 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시설 전단 측정 면제

**사. (보조금 신청 및 준공심사)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후 보조금 지급**

-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보조금 지급 신청서 **【붙임 1-서식 11】** 에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 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붙임 1-서식 13】** , 전송 확인서 **【붙임 1-서식 14】** 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기술자문료 입금증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진주시에 제출

※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붙임 1-서식 15】** ,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등 함께 제출

- 방지시설 및 IoT 적정 설치와 정상작동 여부 확인(진주시)

**아.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II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관련자료 붙임 2)

### 1.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2-1】

가. 지원내용 및 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 실제 설치비의 90% 지원

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수량 제한 없음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를 포함하여야 함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0 ~ 600A	0 ~ 500mmH <sub>2</sub> O	-40 ~ 100℃	0 ~ 14pH
오차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온도보상	-	-	-	0 ~ 50℃ <sup>3)</sup>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4 ~ 20mA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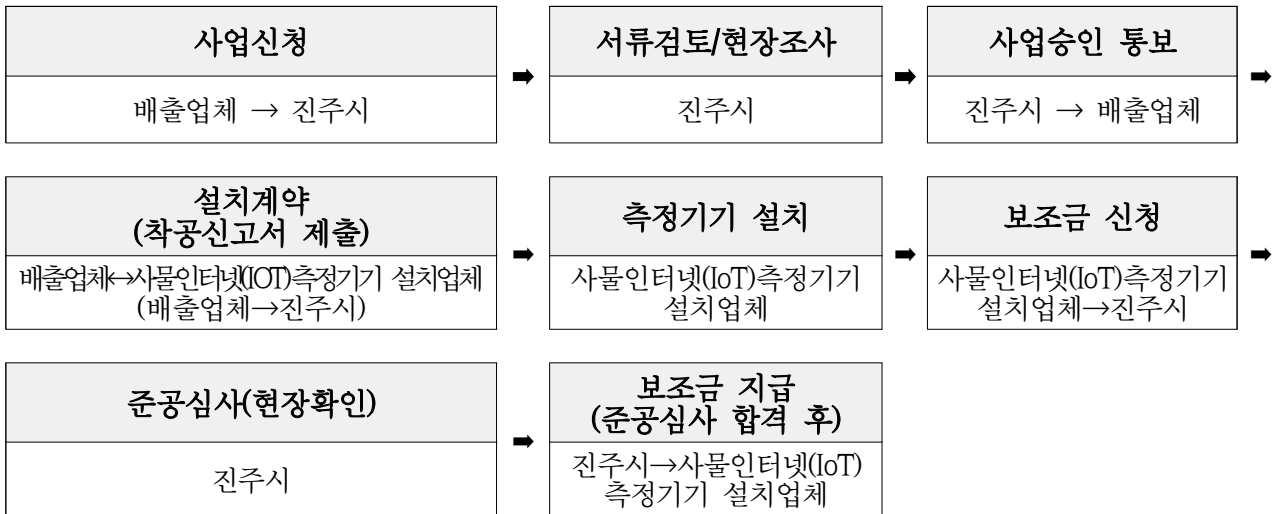
### 나. 우선지원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

### 다.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붙임 2-서식 5】 와 구비서류를 진주시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나.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대상사업(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배출시설의 경우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현장조사 가능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사업승인)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소에 개별 통보

라.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서 제출 **【붙임 2-서식 10】**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진주시에 제출(단,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1개월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해 계약 체결기간 연장 요청 가능)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진주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 6.)**”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 가능

바. (보조금 신청 및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붙임 2-서식 12】** 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붙임 2-서식 13】** ,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붙임 2-서식 14】** 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보조금 신청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붙임 2-서식 16】** ,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사. (보조금 지급)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III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관련자료 붙임 3)

#### 1.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가. 지원내용 및 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전환 연료 종류 및 시설 규격별로 설치비의 90% 지원 (공급연료 종류·시설 규격별 설치비 및 보조금액은 【붙임 3-1】 참고)

※ 저녹스 버너 교체의 경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관련 기준에 따름

나. 연료전환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종류	LNG 연료전환시설	LPG 연료전환시설
설치비	최대 100백만원	최대 150백만원
보조금	최대 90백만원	최대 135백만원

####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병커-A, 병커-B, 병커-C),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
  - 사업장당 1대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범위 : 저녹스버너, 가스공급시설, 옥외(노출) 배관 등 기타공사 【붙임 3-2】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서류 심사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업체 선정 【붙임 3-4】

라.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배출시설(저녹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배출시설 등)

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3. 시공사 선정

가. (시공업체 선정) 지원사업장에서 가스시설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진주시에 제출

나. (시공가능업체)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제2종)을 등록한 업체 【붙임 3-3】

- 사업장에 설치하려는 가스시설의 종류가 종별 등록된 업무내용에 적합하여야 함

#### 4.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 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연료전환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3-서식 3-1】 를 진주시에 제출
- 연료전환시설 설치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자가측정 결과 등 구비서류 제출
- 나. (신청서 검토) 연소시설 노후도, 교체연료의 적합성,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환경민원 발생, 개선효과 등 종합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다.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가스시설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진주시에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진주시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라.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연료전환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마.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 【붙임 3-서식 9-1】 를 진주시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가스시설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 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기술검토 결과서**를 진주시에 제출하여야 함

바. (연료전환시설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연료전환시설 설치 완료

- 배출시설 교체 완료 후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대상인 경우 배출시설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사. (준공심사 및 보조금 신청) 연료전환시설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연료전환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가스시설시공업체가 보조금 지급 신청서** 【붙임 3-서식 11-1】 등 관련 서류 진주시에 제출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 증명서 포함)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IV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관련자료 붙임 4)

### 1.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4-1】

가. 지원내용 및 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 실제 설치비의 90% 지원

※ 방지지설 설치비의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 등)의 지원금액에 따름

###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 및 노후 저녹스 버너(설치 연도 기준 10년 초과 설비)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 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다.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 3.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 및 기준

가. 우선순위

○ 사업장별 1대를 아래 우선순위를 따르되, 동일 우선순위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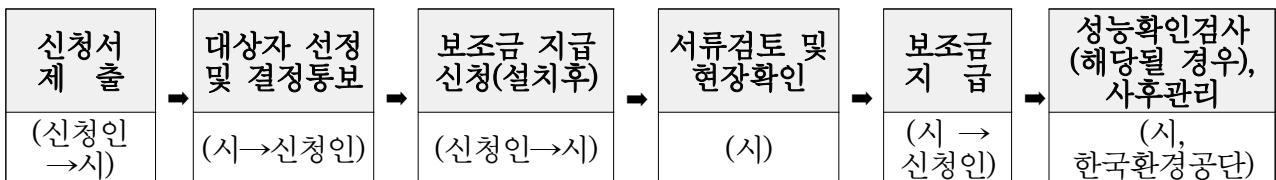
○ 노후 저녹스버너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저녹스버너 설치 기준 10년 초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녹스버너보다 대기오염물질

## 개선효율이 높은 시설을 지원(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①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			
○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보일러용량(톤/hr)×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구분	기존 일반버너	저녹스버너 교체	저감계수 (톤/년)
1	B-C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9678
2	B-C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8789
3	B-C유 일반버너	B-C유 저녹스버너	0.3224
4	경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3130
5	경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2234
6	LNG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1857
※ 1톤/hr 보일러, 부하율 64% 연간 3,600시간 가동 기준(1톤=619,000kcal로 산정)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4.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 (사업신청) 신청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붙임 4-서식 4】** 를 진주시에 제출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성적서, 사후관리검사 이행동의서 등 구비 서류 제출

나. (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결정) 연소시설 노후도, 개선효율 등 종합검토 및 현장조사  
다. (준공심사 및 보조금 신청) 시설 설치완료 후 **【붙임 4-서식 11】** 등 관련 서류 진주시에 제출

라. (성능확인검사) 성능확인검사 대상 **【붙임 4-덧붙임 2】** 에 해당될 경우 저녹스버너 설치완료 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성능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자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함

**※ 제시되지 않은 세부 절차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절차 준용**

## V 기타 공통사항

### 1. 보조금 회수

#### 가.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 나. 보조금 환수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서식 17】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

#### 다.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등 미가동 사유가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미가동 사유가 명백하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2. 기타

#### 가.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 01.)」 및 진주시의 결정에 따른다.

#### 나. 제출서류는 공고문의 첨부서류와 작성안내 등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예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보완 및 반려가 될 수 있음.

#### 다. 그 외 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사업 담당자(749-865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붙임1]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 관련 자료 1부.  
2. [붙임2]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관련 자료 1부  
3. [붙임3]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신청 관련 자료 1부.  
4. [붙임4]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신청 서류참여 신청 관련 자료 1부. 끝.